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시행세칙

개정 2024.03.28
개정 2022.12.15
개정 2022.07.13
개정 2022.03.22
개정 2021.02.04
개정 2020.09.28
개정 2020.09.09
개정 2020.01.30
개정 2019.06.12
개정 2018.12.14
개정 2018.05.31
개정 2018.01.23
개정 2017.06.27
개정 2016.01.19
개정 2015.03.24
개정 2015.01.30
개정 2014.05.08
개정 2012.10.11
개정 2009.11.12
제정 2003.06.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및 업무

제2조(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2회 이상 학술발표회 또는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제3조(학회지의 발행)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학회지를 발행한다.

1. 매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까지)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약어: JNFCWT, 이하 '학회지'라 한다) 정기 호를 발행한다.

2. 특별호 및 증보판은 필요에 따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학술간행물의 배포) 학회지 등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간행물은 필요시 회원 및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5조(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필요시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연구용역 및 교육훈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필요시 자문, 연구용역 및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 본 학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3장 포상

제8조(포상)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 발전 및 기술 향상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4장 회원

제9조(회비 납부 및 회원 자격) ①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회원은 해당년도 총회 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②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비

가. 정회원 : 20,000원

나. 학생회원 : 5,000원

다. 법인회원의 가입비는 면제할 수 있다.

2. 연회비

가. 정회원 : 50,000원

나. 학생회원 : 5,000원

다. 법인회원 : 2,000,000원 이상의 별도로 정해진 회비(단, 비영리 법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00원 이상의 별도로 정해진 회비로 할 수 있다.)

3. 정회원의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한 정회원의 경우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하며, 평생회원이라 한다.

4. 명예회원은 일체의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③ 개인회원이 2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학술발표회 등록비 할인 등의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④ 법인회원이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서 법인회원의 연회비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후원한 기관은 해당년도에 법인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5장 이사

제10조(이사의 업무 분장)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이사의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 일반,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 등에 관한 업무
2. 재무이사 : 예산, 결산, 출납 및 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사업이사 : 법인회원 관리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업무
4. 편집이사 :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 등에 관한 업무
5. 학술이사 : 학술발표회 등에 관한 업무
6. 대외협력이사 : 대내외 홍보, 정보화, 산학협동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7. 국제협력이사 : 국제협력사업 등에 관한 업무
8. 특임이사 : 회장이 부여하는 과업 등에 관한 업무

제6장 평의원회

제11조(평의원회 구성)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의원은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2. 선출직 평의원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평의원과 법인회원 중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간선평의원으로 구분한다.
3.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임원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 나. 회장을 역임한 자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한다).
 - 다. 고문, 기술정책연구소장, 연구분과위원장, 편집분과위원장

제12조(직선평의원의 선출) 직선평의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선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120명 내외의 직선 평의원 후보를 추천 받아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정회원은 직선 평의원 후보 중 60인 이내를 선정,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한다.
3. 직선 평의원은 온라인 투표시스템 집계에 따라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순으로 60인 이내를 이사회에서 의결·확정하며, 선출 후 1개월 이내에 해

당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결과는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간선평의원의 선출) 간선평의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20인 이내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재임(在任)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임(在任)하지 않는 직전 임원의 임기는 예외로 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차기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전까지 연임한다.
3.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선출직 평의원의 수가 50인 이하로 되지 않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제7장 기술정책연구소

제15조(기술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수탁 및 자체연구, 자문 및 평가, 기술정책 개발을 위하여 기술정책연구소를 두며, 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연구사업 관리에 필요한 문서는 책임 전결 및 관리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사업의 계약체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원활한 학회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안건을 조정·확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부회장, 회장이 임명한 총무이사 1인, 학술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3.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활동 결과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 의결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9장 편집위원회

제17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관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의 발행 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8조(학회지 우수논문상)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중 우수한 학술 및 기술 발전이 있는 논문은 우수논문상으로 시상하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9조(연구 윤리) 학회지 발간 및 제반 학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연구 윤리를 준수하게 하여 연구의 도덕적 의무 및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0장 연구분과위원회

제20조(연구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관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국내외 학술발표회 등 전문기술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연구분과위원회를 두고, 연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그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의 기획 및 운영, 발표논문 심사 및 세션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강의, 현안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장 자문위원회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전직 회장들, 고문 및 각계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장 현안검토위원회

제22조(현안검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현안에 대한 본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안검토위원회를 두며, 현안검토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1. 현안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동의의 얻어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 해당사안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부회장, 기술정책연구소장 또는 학술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이 추천하는 총무이사 1인과 연구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또는 위원장의 위임으로 위원회를 주재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 기간에 한한다.
- ③ 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미래세대위원회

제23조(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관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신진연구자와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제고 및 학술발전, 회원 상호간 협력 증진을 위한 미래세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4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의 설치)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학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5장 회계

제25조(회계기준) 본 학회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른다.

제16장 보 칙

제26조(회의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7조(시행일자)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학회 사업분야 수정-사용후핵연료 명시)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2년 10 월 11일부터 시행한다.(평의원회 조항 신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운영위원회 조항 신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편집위원 결격사유 조항 추가)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평의원회 내용 변경)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연구부회를 연구분과로 명칭 변경)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평의원회 내용 개정)

부칙

본 시행세칙 제25조의2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현안검토위원회 조항 신설)

부칙

본 시행세칙 제25조의2는 2018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현안검토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부칙

본시행세칙 제4조의2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학회지 발행 내용 변경)

부칙

본 시행세칙 제3조 3, 제5조, 제9조, 제15조 2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회원자격, 발행물의 배포, 임원 회무의 분장,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부칙

본 시행세칙 제17조 편집위원회는 2020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 제4조의 2는 2020년 6월 01일부터 소급적용한다.(학회지 증보판 발간)

부칙

본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5조는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학술조사 및 연구용역, 연구보안, 교육훈련, 회원가입, 회비 납부 및 회원 자격, 우수논문상)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04일부터 시행한다(평의원 구분별 인원수 변경)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 3항은 2022년 1월 0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